

BCC 탈청제 BA-30A

GHS 개정일자 2016년 2월 1일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

- 가. 제 품 명 : BCC 탈청제 BA-30A
- 나. 일반적 특성 : 액체
- 다. 유해성 분류 : 자극성 물질
- 라. 제품의 용도 : 알미늄 세척(핀세척제)

2. 공급자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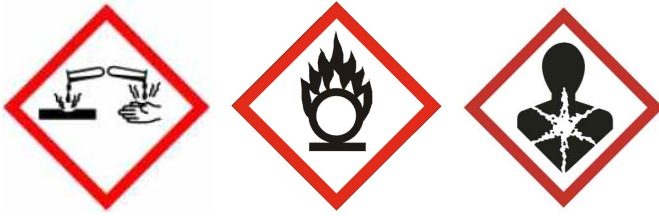
- 가. 공급회사명 : (주)대명케미칼
- 나. 주 소 :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길, 14
- 다. 전 화 : (02) 462-3857
- 라. 팩 스 : (02) 499-1256

3. 구성 성분의 명칭

| 화학물질명(관용명 및 이명) | CAS번호 | 함유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0. 질산 | 7697-37-2 | 20% |
| 0. 불화소다 | - | 5% |
| 0. 인히비터(INHIBITOR) | - | 5% |
| 0. H ₂ O (물) | 7732-18-5 | 70% |

4. 유해 위험성

- 가. 긴급한 위험 · 유해성정보
 - 급성 독성 물질
 - 흡입 시 급성 폐수종을 일으킨다
- 나. 경고 표지 항목
 - 0. 그림문자



0. 신호어 : 경고

0. 유해 위험 문구

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
0. 예방조치문구

- 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
-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

0. 대응

-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고 심하면 의사의 처치를 받으십시오
- 눈에 접촉 시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.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처치를 받으십시오

0. 저장

- 건냉한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

0. 폐기

- 관련·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, 용기를 폐기하십시오

다. 피부에 대한 영향

- 약상을 입는다

라. 만성 징후와 증상

- 자료없음

5. 응급 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즉시 세안한다
-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접촉부위를 다량의 물로 씻는다
-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

다. 흡입했을 때

-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
- 호흡이 정지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

라. 먹었을 때

- 다량의 식염수를 먹고 토하게 한다

6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인화점 : 해당 없음

나. 자연 발화점 : 해당 없음

다.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: 없음

7.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안전 취급 요령 : 흡입하거나 눈, 피부 및 의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

나. 유출확대를 방지하여 빈 용기에 회수한다

8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 취급 요령 : 흡입하거나 눈, 피부 및 의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

나. 기타 유독물·위험물 법령에 따른다.

9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공학적 관리 방법 : 취급 장소 주위에 안전 샤워, 수세

나. 눈보호 : 보호안경

다. 손보호 : 보호장갑

10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 : 무색, 무취 액체 또는 백색 분말

나. 끓는점 : 섭씨 100도

다. 융점 : 섭씨 34~35도

라. 증기압 : 없음

마. 휘발성 : 없음

11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

- 가열하면 용기가 파손된다

나. 피해야할 조건 및 물질

- 산화제와 혼합하면 중화된다

다. 반응 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

- 일산화탄소 발생

12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급성 경구 독성 : 자료없음

나. 급성 흡입 독성 : 자료없음

다. 만성 독성 : 자료없음

13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 및 생태독성 : 자료없음

나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
14. 폐기시 주의 사항

중화처리 한다

15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취급 보관상에 파손에 주의

16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안 됨

나.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: 해당 안 됨

17. 기타 참고사항

자료 출처 없음

15. 법적 규제 사항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① 작업환경 대상 물질 ② 특수건강관리대상 ③ 관리대상 유해 물질
④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⑤ 노출 기준 설정물질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

다. 위험물 해당 사항; 1. 사고대비 물질 2. 유독물질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사항 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사항 없음

16. 기타 참고 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 한국산업안전공단

나. 최초 작성일 : 1996. 6. 3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 2016. 01. 30

라. 기타 : 없음